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16호
2019. 2. 28.(목)

차 례

고 시(2)

-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보훈병원 증축)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 제2019-28호)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29호)2

공 고(2)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공고 제2019-199호)3
- 2019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공고 제2019-206호)4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195호)5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198호)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202호)33

공 람									
--------	--	--	--	--	--	--	--	--	--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보훈병원 증축)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00-1번지 외 1필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보훈병원(종합의료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덕구(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00-1번지 외 1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대전보훈병원(종합의료시설) 증축공사

다. 사업(증축) 내용

- ◆ 증축내용 : 의료시설 증축(수술실, 의료지원시설, 내과 증축)
- ◆ 건축면적 : 증 397.2㎡ (기정 13,249.445㎡ → 변경 13,646.645㎡)
- ◆ 연 면 적 : 증 926.22㎡ (기정 38,541.95㎡ → 변경 39,468.17㎡)
- ◆ 층 수 : 지하1층/지상5층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 성 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전보훈병원)
-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19. 12. 31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중리동 200-2	중리동로3번길 32-21	2019. 2. 28	건물신축	중리동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237-5	홍도로 139	2019. 2. 28	건물신축	동구 홍도동과 대덕구 중리동을 지나는 도로로서 시작지점인 홍도동의 명칭을 반영	
덕암동 53-9	신탄진로681번길 44	2019. 2. 28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6,810 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

대덕구 2019년(‘18년도 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신청 / 대상요건 충족자에 한함

2. 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기준은 통계청 발표 전년도(2017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527,622원 이하 가구
-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건을 충족해도 제외됨.

3. 지원내용

- 지원금 상한액 600천원
/ 2018년도 사용한 학자금, 전기, 가스, 상수도,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4. 신청기간 : 2019. 03. 21. ~ 2019. 03. 29.까지

5. 첨부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작성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 김광신 (☎ 042-608-6874)

※ 위 조건 충족자는 기간 내 필히 신청바람.

미 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2019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우리 구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10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7억원)보다 72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6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8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4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0.69%입니다.
- ◆ 우리 구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1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고,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로 재정규모나 여건에 비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수입 대비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세무포털(<http://www.daedeok.go.kr/ftp/FTP.do>)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최승묵(042-608-605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먹거리 생산,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지역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마.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인증, 유통, 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바. 지역먹거리 참여주체별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새로운대덕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전화 : 042-608-6122, FAX : 042-608-3813, E-mail : ojk1212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 담당자 오정균(전화 : 042-608-6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의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대덕구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중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2단계 이하의 유통 단계를 거쳐 대덕구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정책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주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분석·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및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새로운대덕추진단장과 에너지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8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연구·인증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 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생산자가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 등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지역먹거리의 가공지원)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공을 통한 관련 분야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역먹거리의 인증 등)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신뢰성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인증·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

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증비용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 가공,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먹거리의 인증 기준·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먹거리 유통지원)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소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①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이하 "관련 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7조(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먹거리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먹거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인근 지역과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먹거리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증기준·인증체계 및 관련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등)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반영 등의 과정을 통

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붕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새로운대덕추진단	
담 당 자	오 정 균
연 락 처	(042) 608 - 612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재활용 추진 협의회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상위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시행으로 상위 법률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 함.

(안 제1~2조).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능 중복으로 재활용 추진 협의회 기능 대행 및 조항 정비(안 제6조).

다.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 : 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후환경과(전화:042-608-6844, FAX:042-608-38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기후환경과 담당자 김수진(☎ 042-608-68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재활용 추진 협의회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상위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시행으로 상위 법률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 함.

(안 제1~2조).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능 중복으로 재활용 추진 협의회 기능 대행 및 조항 정비(안 제6조).

다.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9. 2. 28 ~ 2019. 3. 20 /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을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제17

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제④항부터 제⑥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및 「<u>자원순환기본법</u>」----- ----- ----- -----.</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 ----- ----- 「<u>자원순환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활용 추진 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p>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p>	<p>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p>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환경관련 전문가, 재활용사업자, 주민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
른다.

【 관련 법령 】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삭제<2017. 11. 28.>

-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제17조(협의회의 설치)

-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덕의 제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자문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환경보전운동 주도
 3. 대덕의 제21의 행동원칙과 실천과제의 추진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④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이나 시민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구민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후 환 경 과	
담 당 자 연 락 처	김 수 진 042-608-684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8. 12. 24.)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관련 규정 변경(안 제2조).

“제38조제4항제2호” ⇒ “제38조제4항제1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3.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전화 : 042-608-6622, FAX : 042-608-3824, E-mail : smart-lif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담당자 신윤선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38조제4항제2호</u> 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u>제38조제4항제1호</u> - ----- -----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삭제 <2018. 12. 24.>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